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84
----------	------

2023년 11월 2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10일, 남궁역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1월 29일 상정·원안 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남궁역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게 하여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음수대 설치가 가능

하도록 함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고등교육법」

나. 예산 조치 : 별첨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귀수)

### 가. 개요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교 등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시설을 대상으로 아리수 음수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1조에서는 서울시의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아리수 음수대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아리수음수대 설치가 가능한 학교와 공원 등의 시설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음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와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 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 31 조제 2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유아교육법」 제 7 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
3. 공공기관의 민원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
4. 공원, 광장,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들이 많은 도심의 주요 지점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중, 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는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에 따르는 대학교 등은 제외되어 있는 바,

대학교 등에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동 조례의 목적과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됨.

<교육기관(시설) 아리수음수대 설치 현황('23.9월 기준)>

구 분	합계	초·중·고	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개소	1,416	1,245	167	4
대	23,134	22,696	424	14

※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 등 : 1,484개소, 3,411대

- 특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리수 대학생 서포터즈’ 오프라인 캠페인은 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아리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 내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전무한 상황인 바, 대학교 내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아리수 홍보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수돗물 음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을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9조제3항 중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을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 설치를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p> <p>2. ~ 5.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관리)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음수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 유치원은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6조(설치) ① ----- ----- -----.</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3.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p> <p>4. ~ 7.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 -----.</p> <p>④ (현행과 같음)</p>